

● 제305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2. 2. 7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안일 : 2021. 12. 17.
- 다. 회부일 : 2021. 12. 20.
- 라. 의안번호 : 2992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의회사무처 기구 규정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사무처 설치 근거 인용조문을 현행화함(안 제1조).
- 실·담당관 설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실·담당관 설치 사항을 삭제함(안 제3조 삭제).
-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.

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항을 삭제함(안 제6조 삭제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)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)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,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실·담당관 설치 조항 삭제

- 현행 조례에 따르면,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」 제3조1)에도 동일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 간 중복성을 제거해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3조(실·담당관의 설치)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.	<삭제>

- 1) 제3조(하부조직)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장 밑에 언론홍보실장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·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, 언론홍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3 정책지원관 배치와 사무분장 등(안 제4조)

-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2)에 따른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으로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3)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한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.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4조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관”이라 한다)을 사무처에 둔다.</p> <p>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p> <p>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</p>

2)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	<p><u>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</p> <p><u>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u></p> <p><u>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</p> <p><u>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</u></p> <p><u>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u></p> <p><u>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</p>
--	---

-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단체장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서도 본 조례의 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,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 등에 관한 자치법규상 근거조항을 본 조례보다는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에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.

4 시장 소속 직원의 의회 근무지원 요청에 관한 근거조항 삭제

- 현행 조례에 따르면, 의장은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시장에게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양 기관 소속 공무원은 상호 협의에 의한 교류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직원의 근무지원 요청) 의장은 의회사 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5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, 정책지원관 배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의원입법이 가능한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‘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’는 부칙조항을 ‘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’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